

2021년도 온천종사자교육 재통지

문서번호 : 온협21-84

2021. 10. 20

수 신 : 온천종사자(대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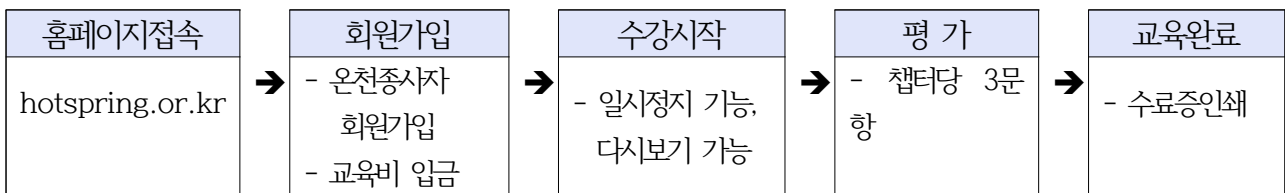
온천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·(특)한국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금년 6월부터 사이버교육만 실시중이며, 10월20일까지 미수료자에게 다음과 같이 재통지하오니 12월 20일까지 착오 없이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교육내용

- 교육시간 : 4시간(년1회)
 - 온천법(행안부)2시간, 온천운영(협회)1시간, 공중위생관리(지자체)1시간

■ 방 법

- 종 류 : 집합교육없이 온라인교육만 실시
- 시 간 : 2021. 6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시로 원하는 시간에 교육 가능
- 교육비 : 3만원(온천협회 신한은행 140-009-424040 계좌이체-업소명의로 송금)
- 접 속 : 교육비 입금후 협회 확인을 거쳐 온라인강의 시작



※ 기존 정회원 회비 납부자(24만원)는 2021년도 정회원 회비 납부자로 인정

※ 교육비 세금계산서발급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전송바랍니다. (이메일주소기재요망)

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



○ 공중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.

※ 관련 온천법 : 첨부 참조

온천법



[시행 2018. 4. 19.] [법률 제14795호, 2017. 4. 18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·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온천"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.
3. "온천종사자"란 온천을 공중(公衆)의 목욕용이나 음용(飲用)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제26조(온천종사자 교육)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,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,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것으로 본다. 다만,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
 2.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3.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·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

온천법 시행규칙

[시행 2017. 7. 26] [행정안전부령 제1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제19조(온천종사자 교육)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,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